

고용기준(Employment Standards) 직장에서의 권리

안내문

ESA 라고 불리는 ‘고용기준법 2000(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은 온타리오 주 내의 직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ESA 는 어떤 사람을 보호하나?

온타리오 주 내에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ESA 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SA 는 연방정부 고용인과 기타 특수 부문에 속한 일부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예외 및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ESA 가 보호하는 기본 권리는 무엇인가?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다음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강요하거나 허락할 수 없습니다:

- 일간 8 시간(규정된 근무시간이 8 시간 이상일 경우 실제 근무시간)
- 주간 48 시간(규정된 근무일 기준)

고용인은 이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하겠다고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고용주가 합의서 작성 이전에 고용인에게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에 관한 노동부(Ministry of Labour)의 안내문을 제공했고 고용인이 이 안내문을 받았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또한 고용인은 고용주가 초과근무에 대한 고용기준국장(Director of Employment Standards)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주 48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예외 조항이 따름).

휴식 기간: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 일간 연속 11 시간의 휴무
- 주간 연속 24 시간 또는 2주간 연속 48 시간의 휴무

초과근무: 대부분의 고용인은 주 44 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정규 임금의 1.5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2010년 3월 31일
일반	시간당 \$10.25
학생*	시간당 \$9.60

* 이 요율은 학기 중에 주 28 시간 이하로 일하거나 방학 중에 일하는 18 세 미만의 학생에게 적용됨.

주의: 주류 서빙 종사자, 가정부, 사냥 및 낚시 안내인의 최저임금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 문의하십시오.

급여일: 고용인은 일정하게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받아야 하며, 해당 급여기간의 임금 및 각종 공제액에 대한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 및 수당: 대부분의 고용인은 12개월의 근무 기간이 지날 때마다 최소 2주의 휴가를 취득하며, 총 급여액의 최소 4%에 상당하는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대부분의 고용인이 공휴일 수당을 받고 휴무하는 날입니다. 온타리오 주는 매년 9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인은 상근직이건 비상근직이건, 영구직이건 학생이건 시한제 계약직이건,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공휴일에는 쉴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가: 자격이 있는 고용인은 최고 17주의 출산 휴가와 최고 35주의 육아 휴가(출산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임신 중 고용인을 비롯하여 기타 모든 유자격 부모는 최고 37주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개인 비상 휴가: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인 직장의 고용인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연간 최고 10일까지 쉴 수 있는 개인비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개인적인 질병, 상해, 긴급 의료를 요하는 상황, 또는 특정 가족의 사망, 질병, 상해, 긴급 의료를 요하는 상황, 긴급 상황 등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 의료 휴가: 고용인은 26주 안에 사망할 위험이 높은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 또는 고용인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을 돌보거나 부양하는 데 가족 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26주 동안 최고 8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해직 통지 및 수당: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고용인의 직책이 해지될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미리 서면 통지를 하거나, 서면 통지 대신 해직수당을 지급하거나,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해직수당의 금액은 해당 고용인의 근무 기간과, 4주의 기간 동안 해직되는 고용인의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의: 이 팸플릿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ESA 권리도 있으며, 모든 고용인에게 ESA 권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 문의하십시오.

고용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이 자신의 ESA 권리에 대해 물어본다고 해서 고용인을 위협하거나, 해고하거나, 징계시키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벌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노동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ES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노동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고용기준감독관(Employment Standards Officer)이 해당 직장을 조사하고 ESA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을 복직시키고, ESA 규정을 준수하고, 고용인에게 보상을 하라는 명령을 고용주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ESA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고용주에게는 벌금형 및/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노조 소속 고용인은 노동부에 연락하기 전에 노조 대표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클레임 제기

클레임이란 고용인의 불만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고용인과 그 직책, 고용주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클레임 제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고용주는 클레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용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클레임 제기 절차 4 단계:

1 단계: 고용주와 면담해보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고용기준 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면담해보아야 합니다. 흔히 이 방법으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와 면담해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미 고용주와의 면담을 시도해보았을 경우
- 임금이 5 개월 이상 체불되었을 경우(체불임금 회수에는 시한이 있음 – 클레임 가이드 5 페이지 참조)
- 직장이 폐쇄되었을 경우
- 고용주가 파산했거나 파산관재 상태에 있을 경우
- 고용주와 면담하기가 두려울 경우
- 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 경우
- 고용인이 현재 입주 보육자로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입주 보육자(live-in caregiver)로 일했을 경우
- 고용주가 사용하는 언어로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 고용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고용인이 장애로 인하여 고용주와 면담하기가 어려울 경우
- 온타리오 주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에 의거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중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지만 고용기준 문제에 관하여 고용주와 면담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클레임 양식(Claim Form) 상에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고용기준 안내센터 (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re)에 문의하십시오(416-326-7160 또는 1-800-531-5551).

노동부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볼 수 있는 워크시트와, 고용주와의 면담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시작하기 전에(Before You Start)’ 책자와 클레임 가이드에 들어 있습니다.

2 단계: 중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클레임 양식을 작성할 때 여러분의 고용 기록에 관한 중요한 서류와 고용주의 연락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노동부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레임 가이드에서 '중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를 참조하십시오.

3 단계: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클레임 양식은 여러 가지 상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작성하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기초 정보에는 별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클레임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면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english/es/forms/claim.php 에서 지원 서비스 연락처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고용기준 안내센터(416-326-7160 또는 1-800-531-5551)에 문의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클레임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접수되면 여러분에게 클레임 번호를 통지한 후 여러분의 클레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4 단계: 노동부에 클레임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개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클레임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www.labour.gov.on.ca/english/es/forms/claim.php. 클레임 양식을 제출하는 즉시 클레임 접수 번호가 발급됩니다.

팩스: 1-888-252-4684

직접 제출: 서비스 온타리오 센터(ServiceOntario Centre), 1-800-267-8097

우편:

Provincial Claims Centre
Ministry of Labour
70 Foster Drive, Suite 410
Roberta Bondar Place
Sault Ste. Marie, ON P6A 6VA

주의: 팩스,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노동부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 클레임 번호가 기재된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클레임 접수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합니다.

클레임 접수 번호는 클레임 양식이 노동부에 접수 및 등록되는 즉시 발급됩니다. 모든 필수 정보가 제출되었음이 확인되면 클레임 번호가 발급되고 클레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클레임이 접수되면 노동부는 먼저 여러분과 고용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사가 시작됩니다. 클레임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노동부에 연락하는 방법

고용기준 안내센터로 연락하십시오(416-326-7160, 무료전화 1-800-531-5551, 청각장애이용 TTY 전화 1-866-567-8893).

노동부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에서 '고용기준(Employment Standards)' 페이지를 방문하면 ESA 권리에 관한 상세 정보가 기재된 온라인 안내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 연락처

-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1-800-387-9080 (무료전화)
- 직장안전및보험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1-800-387-0750
- 캐나다 인력자원기술개발국(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Canada)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관련 일반 문의 – 1-800-206-7218 (무료전화)

이 정보는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확한 최신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기재된 정보에 따라 행동을 취하기 전에 되도록 정보를 확인해보십시오.